

계량기 수리업 및 자체수리의 업무범위 (제4조제5항 및 제5조제2항 관련)

1. 공통사항

형식승인을 받은 구조나 성능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수리행위. 다만, 계량기의 몸체 또는 외갑을 그대로 두고, 내부전체를 수리하는 행위는 수리의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본다.

2. 계량기별 수리업무의 범위

가. 비자동저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수리행위

- 1) 눈금판 또는 눈금대를 변경하는 것
- 2) 로드셀을 변경하는 것

나. 수도미터, 온수미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수리행위

- 1) 최대용량을 변경하는 것
- 2) 눈금판 또는 1눈의 값을 변경하는 것

다. 주유기, LPG미터, 요소수미터: 눈금판 또는 1눈의 값을 변경하는 것을 제외한 수리행위